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5725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 1) B은 수원시 권선구 C 대 312㎡에 관하여 2003. 1. 2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9. 11. 7.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접수 제1177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 산하 동화성세무서장은 2022. 8. 1. B에게 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97,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산금 4,376,150원을 합한 체납세액 합계액은 121,073,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이에 따른 B의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B은 2022. 6.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6. 17. 접수 제98202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의 재산상황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적극재산으로 시가 125,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농협은행 계좌 예금 44,009,39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21,073,970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B의 적극재산은 4,400여 만 원이 남은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121,073,970원이 남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수용 당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들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B의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B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피고는 2021.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2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를 위하여 2022. 5. 17. B에게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B은 2022. 5. 25. 이를 송달받은 점, ③ 피고와 B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은 이후인 2022. 6. 17. 체결된 점, ④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B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본인도 2023. 1. 9.자 답변서에서 ‘양도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자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B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불과 1년 전에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B 지분에 관하여 1년 만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별지]

목 록

1. 경기도 화성시 호

[토지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대 53542.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3.034/53542.1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

[건물명칭.건물번호] 동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59.911㎡

- 이 하 여 백 -

1) 원고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기재된 ‘2022. 6. 17.자 증여’ 및 ‘2022년 6월 17.일 제98202호 접수’ 접수는 모두 B의 1/2지분에 관한 것이고, 청구원인 또한 B의 1/2 지분에 관한 것이므로,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주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으로 기재한다.